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서대문구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견청취,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9조)
- 마. 외부위원 수당 지급,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02) 330-1087, FAX : (02) 330-1442, E-mail: pjj32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제정 내용	의 건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비 고